

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--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9. . .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
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보훈 선양사업 추진

2. 주요내용

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예우 및 지원대상 후단 신설(안 제3조)

- 신설 : 인근시군과 소속을 같이하여 활동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는
예외로 인정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가보훈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
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조례 제 호

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인근시군과 소속을 같이하여 활동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는 예외로 인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예우 및 지원대상) 이 조례 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구 미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주소 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 체로 한다. <후단 신설>	제3조(예우 및 지원대상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. 다만, 인근시군과 소속을 <u>같이하여 활동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</u> <u>보훈단체는 예외로 인정한다.</u>

관계법령

□ 「국가보훈기본법」

제18조(예우 및 지원의 원칙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

제23조(공훈선양사업의 추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5. 22.>

1.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
2.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
(이하 "공훈선양시설"이라 한다)의 설치·관리
3.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
- 3의2. 희생·공헌자의 발굴
4.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로 및 격려
5. 그 밖에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

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보훈단체(국가보훈대상자) 예산지원에 따른 세출 발생(안 제7조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
 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인근 시군과 소속을 같이하여 활동하는 보훈단체(국가보훈대상자)에 소요되는 지원액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
(지원액 : '17년 5,380천원, '18년 8,000천원, '19년 8,940천원)

4. 작성자

복지정책과 김익기 (480-5102)

소관 실·과		복지정책과
입 안 자	과 장	변 동 석
	담 당	윤 희 선
	담 당 자	김 익 기 (480-5102)